

제목 (해명자료) “법무부, 2006년 한-미 FTA 추진당시 투자자국가소송제 사법주권 침해..

담당부서 대변인실 전화번호 02-2110-3009

“법무부, 2006년 한-FTA 추진 당시 내부분건 ‘투자자국가소송제 사법주권 침해’“와 관련된 2011.10.31.자 기사(한겨레)는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달라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.

□ 보도요지

○ 민주당 김재윤 의원 '11. 10. 30. 법무부 내부분건 공개

○ 법무부는 '06년 당시 정부 공식입장과 달리 투자자-국가 소송제도(ISD)를 “사법주권 침해”라고 판단

○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 '06. 07.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문제 제기, 이로 인해 ISD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T/F 구성

- T/F에서는 법무부, 건설교통부 등이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였으나 제도의 삭제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음

□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

○ 법무부가 투자자-국가 소송제도(ISD)를 “사법주권 침해”라고 판단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

- 법무부는 ISD 관련 대응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실은 있으나, 이를 "사법주권 침해"라고 판단하거나 그러한 입장을 가진 바 없음

○ 법무부는 협상 초기에 ISD 협정문 초안에 대해 국내법상 배치되는 조항들에 대한 보완 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여 T/F가 구성되었고, 관계부처 등 협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보완이 이루어졌음

- 법무부는 미국 측과의 FTA 협상을 통하여 충분한 보완조치를 하였고,

-특히, 간접수용의 보상대상에서 ‘재산적 이익(property interests)’을 제외하여 ‘재산권(property rights)’으로만 한정하였고, 간접수용에 우리나라 수용법제의 핵심개념인 “특별희생(special sacrifice)" 법리를 추가하는 등 우리 헌법상의 보상원칙을 반영하였으며(한-미 FTA 부속서 11-나),

-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는 공공복지 목적 조치의 분야에 보건, 안전, 환경 외에 “부동산

가격 안정화 조치”를 추가하고, 이러한 열거는 한정적이 아닌 예시적 열거임을 각주에 명기하여 간접수용의 예외범위를 확대하는 등 국내법과 조화를 이루었으며(한-미 FTA 부속서 11-나),

- 또한, 중재판정부 의장중재인은 합의가 없는 한 제3국인으로 임명하고, 전체 중재과정에서 한국어와 영어가 모두 공식 중재언어임을 규정하는 등 중재판정부의 공정성을 제고하였음(한-미 FTA 제11.19조 제3항, 제11.20조 제3항 등)

○ 따라서, ISD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